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위원회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학생선수의 차별·혐오표현 금지 및 제재〉

■ 이용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897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용선 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6. 7. 10.
3. 회부연월일 : 2026. 7.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스포츠 현장은 단순한 신체 단련을 넘어 공정성과 상호 존중, 올바른 공동체 의식을 배우는 교육의 장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생선수들이 온라인상의 혐오발언을 무분별하게 수용하여 경기장에서 표출하는 것은 학교체육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임.

그런데 현행법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이나 폭력 예방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역사 왜곡이나 지역 비하 등 혐오표현 및 차별적 언동에 대한 금지 규정과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학생선수가 학교운동부 활동 및 경기대회 참가 중 인종, 성별, 출신 지역, 역사적 사실 등을 왜곡·비하하는 혐오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인권교육 이수 및 경기대회 출전 제한 등의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스포츠 현장 내 인권 존중 문화를 확립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춘 체육 인재를 양성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 개정안은 학생선수가 학교운동부 활동이나 경기대회 참가 중 차별·혐오 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며, 위반 시 학교장이 그 학생선수에게 인권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① ~ ⑦ (생략) <u><신설></u>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u>학생선수는 학교운동부 활동 및 경기대회 참가 중 인종, 성별, 출신 지역, 역사적 사실 등을 왜곡·비하하는 차별적 언동 및 혐오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⑨ <u>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제8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12조의3에 따른 인권교육을 이수하게 하여야 하고, 학교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u>

2. 검토의견

□ 현행 법령 체계를 보면, 「학교체육 진흥법」, 「교육기본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등에서는 학생선수를 비롯한 학생 및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으나, 학생선수가 학교운동부 활동이나 경기대회 참가 중 차별적 언동이나 혐오표현을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 「학교체육 진흥법」 1)은 학교의 장에게 학생선수의 안전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책무를 부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교육기본법」 2)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학생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민체육진흥법」 3)은 체육계 인권침해에 차별행위를 포함하고, 국

1) 「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
2. 제8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 및 제9조에 따라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대책
3. 제10조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제11조에 따른 학교운동부 운영
4.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이하 생략)

제12조의3(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수 등 체육인을 체육계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학생선수가 학교운동부 활동 및 경기대회 참가 중 인종, 성별, 출신 지역, 역사적 사실 등을 왜곡·비하하는 차별적 언동 및 혐오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학교의 장이 인권교육을 이수하게 하며 학교체육위원회⁴⁾의 심의를 거쳐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학교운동부 활동 및 경기대회는 경기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과 상호 존중 등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배우는 교육활동이라는 점에서, 학생선수의 차별·혐오표현을

11의3. “체육계 인권침해”란 운동경기, 훈련, 체육단체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 간에 발생하는 인권침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학력·장애·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8조의2(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①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한다.

② 스포츠윤리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0. 8. 18., 2022. 1. 18., 2025. 1. 31.>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가.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성폭력 등 폭력에 관한 사항

나. 승부조작 또는 편파판정 등 불공정에 관한 사항

다. 체육 관련 입시비리에 관한 사항

라. 체육단체·경기단체 및 그 임직원의 횡령·배임 및 뇌물수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보조금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위반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4) 한편, 개정안은 학교의 장이 ‘학교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학교체육 진흥법」에는 학교체육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거나 심의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예방하고 학교체육 현장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그 의의가 있다고 보여짐.

특히 최근 고교 야구 경기에서 일부 학생선수의 상대 지역 및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부적절한 응원이 사회적 논란이 되는 등 학교 스포츠 현장에서의 차별·혐오표현을 예방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 다만, 개정안의 적용 대상 및 금지행위의 명확성, 경기대회 출전 제한의 기준·절차 등의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먼저, 개정안은 이러한 금지행위를 한 학생선수에게 인권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이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에서도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학생선수⁵⁾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⁶⁾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저학력은 학교가 학생의 학업성적을 통해 직접 확인·

관리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고, 참가 제한의 기간도 법령에서 구

5)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6)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생선수가 제2항에 따른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의2(참가 제한 경기대회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란 학생선수가 학생선수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를 말한다.

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반면, 개정안이 금지하려는 차별적 언동이나 혐오표현은 경기대회 등 학교 밖의 체육활동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경기 현장에서의 사실관계 확인 및 조치는 대회 주최기관이나 종목별 경기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참고로, 선수의 비위행위에 대한 출전정지 등 징계는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기존의 경기 및 선수 관리체계를 고려할 때, 학교의 장이 비위행위를 판단하여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경기대회 출전 제한은 학생선수의 선수활동 및 진학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사후에 그 기회를 회복하기 어려운 조치라는 점에서, 위반행위의 확인·판단 절차와 출전 제한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개정안은 학교의 장이 ‘학교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학교체육 진흥법」에는 학교체육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심의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경기대회 및 훈련 등 체육활동에는 학생선수뿐만 아니라 일반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등 다양한 체육인이 참여하고 있고, 이들에

의한 차별적 언동이나 혐오표현 역시 체육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체 체육인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교육부는 최근 학생선수의 부적절한 상대 비하 응원 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시·도교육청 등에 학생선수의 올바른 경기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학교체육 활동 중 인종 차별적 언행이나 특정 지역·학교·개인 등을 비하·모욕하거나 혐오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하지 않도록 사전교육과 현장지도를 실시하도록 안내⁷⁾하였음.

따라서 차별·혐오표현에 대한 법률상 제재의 필요성을 검토함에 있어, 학교 현장에서의 예방교육과 학생의 인식 개선 등 교육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관계기관의 의견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차별·혐오표현의 금지는 모든 선수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보편적 가치이므로, 「학교체육 진흥법」보다는 「국민체육진흥법」의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신중검토 의견임.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이미 학생선수를 포함한 전체 선수를 대상으로 차별행위 등 인권침해의 예방 및 조치에 관한

7) 「학교체육 활동 참여 학생의 올바른 경기 문화 실천 및 확산 협조」(‘26.7.)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부산·경기·울산 교육청 등은 ‘왜곡·비하’, ‘혐오표현’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판단기준이 없어 실제 적용 과정에서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고 학생·학부모의 반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 6788-5193